

신노후생활연금신탁 채권형 제()호 약관(구 하나은행) 개정 대비표

현 행	개정안	비 고
<p>제4조(거래장소) 거래처는 계좌를 개설한 영업점(이하 "개설점"이라 함)에서 거래하여야 합니다. 다만,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영업점, 다른 금융기관 또는 현금자동입출금기·컴퓨터·전화기 등(이하 "전산통신기기"라 함)을 통하여 거래할 수 있습니다.</p>	<p>제4조(거래장소) 거래처는 계좌를 개설한 영업점(이하 "개설점"이라 함)에서 거래하여야 합니다. 다만, 은행이 <u>은행이 사전에 안내한</u> 다른 영업점, 다른 금융기관 또는 현금자동입출금기·컴퓨터·전화기 등(이하 "전산통신기기"라 함)을 통하여 거래할 수 있습니다.</p>	문구 수정
<p>제10조(신탁재산의 표시)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신탁의 등기·등록 또는 신탁의 표시나 기재를 생략 할 수 있습니다.</p>	<p>제10조(신탁재산의 표시) <u>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기 또는 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재산임을 표시합니다.</u></p>	문구 수정
<p>제15조(판매금액 및 판매기간) 이 신탁은 판매금액 및 판매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다만, 수익자보호 및 자산운용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판매금액 및 판매기간에 제한을 둘 수 있습니다</p>	<p>제15조(판매금액 및 판매기간) 이 신탁은 판매금액 및 판매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u>다만, 관련 법령 및 금융감독당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금액 및 판매기간에 제한이 설정되는 경우 은행은 제한 내용을 지체 없이 서면 등 사전에 거래처와 합의한 방법으로 통지하고,</u></p>	단서조항 수정

현 행	개정안	비 고
<p>제24조(조세 및 비용) ① 신탁재산에 관한 조세 및 기타 신탁업무에 필요한 비용은 신탁재산 중에서 지급합니다</p> <p>제25조(수수료) ①거래처가 개설점이 아닌 다른 영업점이나 다른 금융기관 또는 전산통신기기 등을 통해 거래할 때 은행은 온라인수수료나 추심수수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p> <p>② 은행은 제1항의 경우 외에도 증서재발행 등의 거래와 관련하여 거래처가 원하거나 거래처 잘못으로 생긴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p>	<p><u>은행의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 매체를 통하여 비치 또는 게시합니다.</u></p> <p>제24조(조세 및 비용) ① <u>은행의 책임 있는 사유 없이 발생한</u> 신탁재산에 관한 조세 및 기타 신탁업무에 필요한 비용은 신탁재산 중에서 지급합니다</p> <p>제25조(수수료) ①거래처가 개설점이 아닌 다른 영업점이나 다른 금융기관 또는 전산통신기기 등을 통해 거래할 때 은행은 <u>사전에 안내한</u> 온라인수수료나 추심수수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p> <p>② 은행은 제1항의 경우 외에도 증서재발행 등의 거래와 관련하여 거래처가 원하거나 <u>거래처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한</u>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p>	<p>문구추가</p> <p>문구추가</p> <p>문구수정</p>

현 행	개정안	비 고
<p>제31조(사고·변경사항의 신고) ①거래처는 증서·거래인감 등을 분실·도난·훼손했을 때는 곧 서면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영업시간 중에 전화 등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때는 다음 영업일안에 서면 신고하여야 합니다.</p> <p>②거래처가 인감(또는 서명)·비밀번호·성명·상호·대표자·대리인 등 신고사항을 변경할때는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의 신고는 은행이 이를 접수한 후 전산입력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데 걸리는 합리적인 시간이 지나면 그 효력이 생기며 전산장애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처리하지 못한 때는 복구 등 사유해제시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제1항 및 제2항의 신고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거래처가 직접서면으로 해야 합니다</p> <p>제36조(통지방법)</p>	<p>제31조(사고·변경사항의 신고) ①거래처는 증서·거래인감 등을 분실·도난·훼손했을 때는 <u>지체 없이</u> 신고하여야 합니다.</p> <p>②거래처가 인감(또는 서명)·비밀번호·성명·상호·대표자·대리인·<u>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u> 등 신고사항을 변경할때는 <u>지체없이 은행에</u> 신고하여야 합니다.</p> <p><삭 제></p> <p>제36조(통지방법)</p>	<p>문구수정 및 단서 삭제</p> <p>문구추가</p>

현 행	개정안	비 고
<p>①은행은 거래처에게 통지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신고된 연락처로 서면이나 전화 등으로 통지합니다</p> <p>②은행이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우송기간이 지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p> <p>③<신 설></p> <p>제37조(신탁금의 시효) 신탁금에 대한 수익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으로 합니다</p>	<p>①은행은 거래처에게 통지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신고된 연락처로 서면이나 전화 등 <u>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u> 통지합니다</p> <p>②은행이 제1항의 통지를 서면으로 했을 때는 <u>은행의 책임있는 사유없이 거래처의 책임있는 사유로 은행에 대한 통지등이 연착하거나 도착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 후</u>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p> <p>③은행이 신탁의 해지 등 중요한 의사표시를 하는 때에는 그 통지가 거래처에 도달되어야 <u>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관계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은행의 책임 있는 사유 없이 거래처가 제31조에 의한 변경신고를 게을리하여 도달되지 않은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 후</u>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p> <p><삭 제></p>	<p>문구추가</p> <p>문구수정</p>

현 행	개정안	비 고
<p>제38조(약관의 변경등)</p> <p>① 이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영업점에 1개월동안 게시하고 이 기간이내에 거래처가 서면으로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면 이를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p>	<p>제37조(약관의 변경 등)</p> <p>①은행은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약간의 시행일 1개월 전에 거래처가 확인할 수 있도록 은행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온 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합니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정의 재·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합니다.</p> <p>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거래처에게 불리한 경우 은행은 이를 서면 등 거래처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 전 최소 1개월 전까지 거래처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거래처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거래처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p>	<p>조항변경 내용추가 및 신설</p>

현 행	개정안	비 고
<p data-bbox="206 338 385 379"><신 설></p> <p data-bbox="206 673 385 715"><신 설></p> <p data-bbox="206 858 385 900"><신 설></p> <p data-bbox="206 1232 913 1315">② 이 약관에서 정한 사항을 관계법령이나 신탁업감독규정에서 변경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p>	<p data-bbox="936 306 1191 347">하지 않습니다.</p> <p data-bbox="936 354 1639 651">③ 은행은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거래처는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 예정일 전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p> <p data-bbox="936 657 1639 858">④ 거래처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변경 예정일 전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p> <p data-bbox="936 865 1639 1216">⑤ 은행은 약관을 은행의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거래처가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거래처가 약관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p> <p data-bbox="936 1232 1124 1273"><삭 제></p>	

현 행	개정안	비 고
<p>기로 합니다.</p> <p>제39조(면책) ① 은행은 지급청구서 등에 표기된 인영(또는 서명)을 신고한 인감(또는 서명)과 육안에 의하여 상당한 주의로써 대조하여 틀림없다고 인정하고 지급청구서 등에 적힌 비밀번호가 신고한 비밀번호와 일치함을 인정하여 지급 등의 처리를 한 경우에는 거래인감(또는 서명)과 지급청구서 등의 도용·위조·변조, 비밀번호의 누설이나 그 밖의 어떠한사고로말미암아 거래처에게 손해가 발생하여도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p> <p>②은행은 전산통신기기 등의 이용이나 거래정보등의 제공과 관련하여 은행의 책임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계좌번호,비밀번호 등이 누설됨으로써 거래처에게 손해가 발생하여도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p>	<p>제38조(면책) ① 은행은 지급청구서 등에 표기된 인영(또는 서명)을 신고한 인감(또는 서명)과 육안에 의하여 상당한 주의로써 대조하여 틀림없다고 인정하고 지급청구서 등에 적힌 비밀번호가 신고한 비밀번호와 일치함을 인정하여 지급 등의 처리를 한 경우에는 거래인감(또는 서명)과 지급청구서 등의 도용·위조·변조, 비밀번호의 누설이나 그 밖의 사고로말미암아 거래처에게 손해가 발생하여도 <u>은행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u>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p> <p>②은행은 전산통신기기 등의 이용이나 거래정보등의 제공과 관련하여 은행의 책임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계좌번호,비밀번호 등이 누설됨으로써 거래처에게 손해가 발생하여도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u>다만, 은행은 거래처로부터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의 누설을 통지 받은 때에는 그때부터 제3자가 계좌번호, 비밀번호를</u></p>	<p>조항변경 문구추가</p>

현 행	개정안	비 고
<p>③은행은 제31조 신고 및 절차의 지연으로 말미암아 거래처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지지 아니합니다.</p> <p><신 설></p>	<p><u>사용하여 거래처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u></p> <p><u>③거래처가 거래처의 책임있는 사유로 제 31조의 신고를 지연하여 발생한 거래처의 손해에 대하여 은행은 은행의 책임있는 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u></p> <p><u>④제1항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자금융거래시 접근매체(카드,비밀번호등)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거래처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다만, 거래처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등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에 정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u></p>	

현 행	개정안	비 고
<p data-bbox="219 306 407 338"><신 설></p> <p data-bbox="206 561 913 699">제40조(관계법령 등의 준용)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신탁업감독규정 및 은행 내규에 의하여 처리합니다.</p> <p data-bbox="206 769 913 1114">제41조(관할법원) 은행,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신탁계약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소송을 제기하는 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영업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p>	<p data-bbox="945 306 1639 497">⑤ <u>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에 거래처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을 우선 적용합니다.</u></p> <p data-bbox="936 561 1644 699">제39조(관계법령 등의 준용)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u>관계법령, 관련 감독규정을 적용합니다.</u></p> <p data-bbox="936 769 1644 960">제40조(관할법원) 은행,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신탁계약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u>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u></p>	<p data-bbox="1662 561 1796 651">조항변경 문구수정</p> <p data-bbox="1662 769 1966 858">조항변경(이하 체하) 단서 삭제</p>